

<p>의 추천이나 심사과정 없이 수여토록 한 안 제2조의 특별명예시민증의 수여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임법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 제8조와 같이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원, 위원장 선출,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및 임기와 같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은 조례로 정하고 그 외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</li> </ul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</p> <p>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</p> <p>가. 수정이유 :</p> <p>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중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</p> <p>나. 주요골자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과 같이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)</li> <li>○ 시장이 외빈 등에게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 단서)</li> <li>○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,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,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,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</li> </ul> <p>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	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613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2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(2000년 7월 5일) 상정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송영식 기획관리실장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·중등교육법 개정(1999. 8. 31, 법률 제 6,007호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2000. 2. 28, 대통령령 제16,729호)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</li> </ul>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규모 학교(학생수 60명 미만)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함.(안 제2조제2항)</li> <li>○ 교원위원 선출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, 학부모위원 간접 선출 근거를 정비함.(안 제3조제1항)</li> <li>○ 위원 보궐선출시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.(안 제3조제3항)</li> <li>○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함.(안 제3조제4항)</li> <li>○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(안 제12조제3항)</li> </ul>	의안 번호	613
의안 번호	613		

<p><b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</b> (전문위원 윤병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('99.8.31) 및 동법시행령(2000.2.28)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, 교원위원 선출자격을 당초 교원전체회의에서 교원 외에 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토록 하였고, 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교원 전체 회의에서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, 회의 개최는 연간 10회 이상, 30일 이내에서 8회 이상, 20일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임.</li> <li>○ 안 제3조제3항의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로 하고 있으나, 이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결원이 1/4 이상이 되면 보궐선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위원을 보궐 선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보궐 선출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.</li> <li>그러나 비록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라도 운영위원회 회의개최가 곤란할 정도의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원만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위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궐선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.</li> <li>○ 안 제12조제3항의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 10회 이상, 연 30일 이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연 8회 이상 연 20일 이내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,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, 운영된 이후 그간의 운영실태에 비춰볼 때 연 10회 이상 개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방학 중 개최 곤란, 위원의 부담가중 등과 같은</li> </ul>	<p>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회의 횟수와 일수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, 당초 6회 이상으로 축소하려던 것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8회로 수정된 바 있음.</p> <p>다만,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도입의 취지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정착이라는 측면과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요망됨.</p> <p><b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b></p> <p><b>5. 토론요지 : 없음</b></p> <p><b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b></p> <p><b>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</b></p> <p><b>가. 수정이유</b></p> <p>운영위원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위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궐선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잔여임기 기간을 축소</p> <p><b>나. 주요골자</b></p> <p>○ 결원된 위원이 보궐선출 기간을 “잔여임기 6월 미만”에서 “잔여임기 3월 미만”으로 함. (안 제3조제3항)</p> <p><b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b></p> <p><b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615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<b>1. 심사경과</b>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2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(2000년 7월 5일) 상정의결</p> <p><b>2. 제안설명의 요지</b> (제안설명자 : 이상갑 교육정책국장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○ 「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('99. 1. 15 조례 제3561호)제정시 학생교육원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는 「서울특별시 학생교</p>	의안 번호	615	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
의안 번호	615	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		